전국1타 메가랜드 종로 ☎ 02) 2135-1806 전원합격!! 이론요약과정

2021년 03월~04월(2주차) 핵심내용 및 문제

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



[제1편] 공인중개사법령 제3장 등록 및 결격사유

- (1) 등록관청 :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의 시·군·구청장
- (2) 등록신청권자: 공인중개사(소속공인중개사는 (포함/ 제외)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(법 제9조 제2항).
- (3) 등록절차 : 등록의 "신청" \to "등록" (등록 및 등록의 통지) \to () \to 등록 "증" 교부 \to 업무개시
- (4) 등록요건
- ① 공인중개사: 〈자.결.사.실〉 ③ 자격증 ○, ⑥ 결격사유 ×, ⑥ (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) 사무소 확보 ○, ⑧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.○
- ② 법인: 〈목.자.대.임.사〉

등<mark>록</mark>의 요건 및 절차

결격사유

(법 제10조)

- ① 〈목적〉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일 것, (제14조 : 중개업, 관리대행, 상담, 기타 용역업의 알선, (주택'상가) 분양대행, (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) 경영기법'정보제공, 경매'공매 알선 및 대리)
- 〈자본금〉「상법」상의 회사(회사의 종류는 불문)이거나, 협동조합기본법상의 협동조합(사회적 협동조합은 (포함/제외)) 으로서, 자본금 ()원 이상이어야한다.
- ⓒ 〈대표자〉 대표자는 ()이어야 한다.
- ② 〈임원〉 임원(무한책임사원)의 () 이상(대표자 제외)이 공인중개사이어야하며, 임원(무한책임사원) "전원"이 실무교육 받고, 결격사유는 없어야 한다.
- ②〈사무소〉중개사무소를 확보하여야 한다. (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이어야 하고, 가설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은 (포함/ 제외)하며, 준공검사` 사용승인 받은 건물은 포함한다)
- ① () ② 피한정후견인 ③ 피성년후견인 ④ (
- ⑤ 금고 이상(징역, 금고)의 실형 선고를 받고,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되고 ()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① 만기석방 + 3년 경과 × ⑥ 특별사면 + 3년 경과 ×
- ⑥ 금고 이상(징역, 금고)의 형에 대한 (집행유예/ 선고유예) 기간 중인 자
- ⑦ 이 법 위반 + 벌금형(300만 원 이상)의 선고 + ()년 경과 되지 아니한 자
- ⑧ 이 법 위반 + 자격취소 + ()년 경과 되지 아니한 자
- ③ 이 법 위반 + 등록취소 + 3년 경과 × (예외 있음 : 결격'사망'해산'등록기준미달)
- ⑩ 이 법 위반 + 자격정지 + 그 기간 중인 자
- ① 이 법 위반 + 업무정지 받고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,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
- ② 중개법인의 업무정지 (사유발생 당시/ 처분당시)의 사원,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중개법인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〈사발당 임원〉
- ⑬ 사원, 임원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중개법인

정 답

(2) (제외) (3) 업무보증 (4) ⓒ(제외), (5천만) ⓒ(공인중개사) ⓒ (1/3) ⑩ (제외)// ⑪ (미성년자) ④ (파산선고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) ⑤ (3) ⑥ (집행유예) ⑦ (3)년 ⑧ (3)년 ⑫ (사유발생 당시)

[제1편] 공인중개사법령 제3장 등록 및 결격사유 [필수핵심문제]

- 1. 다음은 "중개업 등록"에 관한 설명이다. 틀린 것은?
- ① 공인중개사(소속공인중개사 제외)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.
- ② 등록신청은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(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에 한함)' 군수' 구청장에게 하여야 한다.
- ③ 등록신청 시에는 반드시 개별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공동명의로 등록을 신청할 수는 없다.
- ④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기간 중에는 중개업을 폐업하고, 다시 중개업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.
- ⑤ 이중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이 된다.
- 2. 다음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이다. '옳은' 것은? (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함)
- 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대표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.
- ②「건축법」상 가설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축물에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.
- ③ 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.
- ④ 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과반수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.
- 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개설등록을 하려면 상법상 회사이거나, 협동조합기본법상의 협동조합(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)으로서 자본금은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.
- 3. 공인중개사법령상 "법인"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려는 경우, 이에 관한 설명으로 '옳은'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함)
 - 고. 중개업 및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.
 - ㄴ. 자본금이 2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.
 - ㄷ. 법인의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.
 - 리.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(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함)이 9명이라면 그 중 3명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.
- ① 7, 6 ② 7, 6 ③ 6, 7, 6, 2

4. 다음은 등록에 대한 제재와 관련된 내용이다. 틀린 것은?

- ① 이중등록을 한 자는 절대적 등록취소사유에 해당되며, 또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도 된다.
- ② 이중소속을 한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의 대상이면서, 또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이하의 벌금의 대상도 된다.
- ③ 이중소속을 한 중개보조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된다.
- ④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는 절대적 등록취소사유에 해당되며, 또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도 된다.
- ⑤ 등록관청으로부터 등록의 통지를 받았으나, 등록증을 교부받기 전에 중개업을 영위한 자는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된다.

5.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?

- ① 징역10년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한 자
- ②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- ③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④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
- ⑤ 자신의 행위로 공인중개사법령을 위반하여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

6. 「공인중개사법」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 자만으로 묶인 것은?

- ①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이었던 자로서, 당해 법인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 중인 경우
- © 금고 1년,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- ⓒ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후 1년이 경과한 자
- ② 「공인중개사법」위반으로 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경과 한 자
- ◎ 「변호사법」위반으로 벌금형으로 선고받은 자가 무한책임사원으로 있는 법인

| ~ ~ ~ | ~ ~ ~ | ~ ~ ~ | ~ ~ ~ | ~ ~ ~ |
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|
| ① ①, Ü | ② ⑦, ② | 3 L, E | 4 C, O | (5) (2), (D) |

정 답 ===============

1. 4 2. 5 3. 5 4. 5 5. 1 6. 4

| [제1편] 공인중개사법령 제4장 중개업의 경영 | | | | | | | |
|---|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|--|--|
| | | |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|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|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(중개인) | | |
| 개업공인중개사 의 업무범위 | | . 역 범위 | 전국소재 모든 물건 | 전국소재 모든 물건 | 중개사무소가 소재하는 ① (시'군'구/특'광'도) 안에 소재하는 물건 (+거래정보망에 공개된 물건) | | |
| | | 념업 범위 | ② 법 ()에 규정된 업무 | 겸업제한 없음 | 경업제한 없음(원칙) (다만, 경매·공매는 불가) | | |
| 법 제14조 | 〈중.관.상.기.분.경.경〉 | | | | | | |
| ① 고용신고: (고용인의 업무개시 전까지/ 고용일로부터 10일 이내) 개업공인중개사 가 고용신고를 하여야 한다(위반시 업무정지). 고용신고 ② 고용종료신고: 종료일로부터 (7일 이내/10일 이내) 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종료신고를 하여야 한다(위반시 업무정지). ③ 고용신고는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다. | | | | | | | |
| 개업공인중개사 고용책임 | ① 고용인의 (모든 행위/ 업무상 행위)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(간주 / 추정)한다. (즉, ~~'본다')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용인의 (모든 행위/ 업무상 행위)로 인한 민사상` 행정상` 형사 상 책임을 진다. 민사상 연대책임. 행정상 책임 (등록취소, 업무정지), 형사상 양벌 규정(제50조). ⇨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벌금형 (단, 지도` 감독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된다) (판례) 양벌규정에 의한 벌금형은 결격사유에 (해당한다/ 해당하지 않는다) | | | | | | |

절 달 ① (특'광'도) ② (14조) // ○ 관리 © 상담 © 알선 ◎ 분양 ⑩ 경영, 경영 ⊙ 경매 // ① 업무개시 전까지 ② 10일이내 // ① 업무상 행위, 간주 ② 업무상 행위, 해당하지 않는다.

제4장 개업공인중개사, 고용인 [필수핵심문제]

1. 다음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 등에 대한 내용이다. '틀린' 것은?

- ①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(부칙 규정상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)의 업무지역은 당해 중개사무소 가 소재하는 등록관청(시'군'구)의 관할구역으로 한다.
- ②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(부칙규정상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)가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개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망에 공개된 물건은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물건도 중개할 수 있다.
- ③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의 분양대행을 할 수 있다.
- ④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택지의 분양대행을 할 수 없다.
- 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전국에 소재하는 중개대상물을 모두 중개할 수 있다.

- 2, 「공인중개사법령」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적법한 업무(법 제14조)에 해당되는 것은?
- ① 부동산감정평가업
- ② 주택 및 상가건물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
- ③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창업 기법 및 창업 정보의 제공
- ④ 택지에 대한 분양대행
- ⑤ 부동산 개발업
- 3.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'틀린' 것은?
-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고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.
-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을 해고한 경우에는 해고일(고용관계 종료일)로부터 10일 이내에 해고 (고용관계 종료) 신고를 하여야 한다.
- ③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하여야 하나, 중개보조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④ 소속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 작성 등의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
- ⑤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.
- 4.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소속공인중개사 乙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대한 거짓행위로 인하여 중개의 뢰인 丙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. 이에 관한 설명으로 '옳은'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Z의 모든 행위는 그를 고용한 甲의 행위로 추정한다.
- ② 甲은 자신의 행위가 아닌 乙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.
- ③ 甲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이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.
- ④ 甲의 丙에 대한 책임을 인정되는 경우, 乙은 직접 丙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.
- ⑤ 甲은 乙의 행위로 인하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.

- 1. ① 2. ② 3. ① 4. ⑤
- ♥ 수고하셨습니다 ♥화이팅!!!♥
- ♥(다음카페) 김상진의 공인중개사법♥
- ♥(유투브) 김상진공인티비♥